

# 현대카드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대출계약 철회 신청서

## 현대카드 주식회사 귀중

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회원님은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체결한 아래의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회원명	
생년월일	
주소	
연락처	
장기카드대출 이용금액	
장기카드대출 실행일자	
장기카드대출 계약 철회 기간	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(실행일 미포함)

- ※ 대출계약 철회를 원하실 경우, 고객센터(1577-6000)로 연락주시거나, 해당 양식 작성 후 우편 접수(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)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※ 대출계약 철회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해 철회 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, 철회 기간 이내에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을 전액 상환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,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.
- ※ 대출계약 철회 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.
- ※ 대출금액이 4,0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또는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- ※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-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
  -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

본인은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년

월

일

성명(채무자)

서명/인